
무역금융제도의 운용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채진익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ts Improvement Plans in Operation of Korean Trade Finance System

Jing-ik Chae^a

^aDivision of Economics and Trade, Kongju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15 November 2019, Revised 15 December 2019, Accepted 16 December 2019

Abstract

Trade finance promotes export performance, and every small- and medium-sized export business has the right to use policy finance. The credit line is also stipulated by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owever, trade finance has repeatedly been misused, so these matters can lead to substantial financial loss and damage to the related financial institutions. The lack of expertise of K-SURE and the backwardness of banks represent even bigger problems in the follow-up management. The existing trade finance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the following ways from the institutional and legal perspectives. Firstly, follow-up management of beneficiary companies should be reinforced and systematized through examining business tendencies, financial status, and other important factors. There is also a need for advancement of following up management. An effective and streamlined financing system must be established by abolishing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This study presents improvements and their implications by looking into the main issues under the current trade finance system. This study is based on documentary research and practical cases.

Keywords: Trade Finance, Trade Finance System, Trade Finance Fraud, Trade Finance Follow-up Management

JEL Classifications: F13, F19

* This paper was researched by the research support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s Academic Research Support Project in 2019.

^a E-mail: jinchaek@kongju.ac.kr, ac.kr

© 2019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수출 장려책의 일환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무역금융은 정책금융으로 수출 중소기업이면 모두 지원받을 자격이 주어지고 또한 규정된 지원한도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 특히 무역금융은 그 금리가 일반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그 절차도 비교적 간편하다. 따라서 무역금융은 수출기업의 수출실적에 따라 적정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국가의 수출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무역금융은 이와 같은 수출증대를 위해 지원되지만 그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자금의 일시적 융통(유용) 또는 자금세탁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또한 무역금융은 정책적으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그 지원절차가 다소 엄격하지 않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실 또는 사기가 발생되기도 한다.

한편 무역금융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보험)의 지원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 후에 책임 문제가 대두되기도 한다. 예컨대 K-SUR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지원된 무역금융에 사기 또는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기 또는 부실에 대한 책임 문제로 K-SURE와 무역금융을 집행한 은행 측과 많은 갈등이 야기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그 갈등은 무역금융의 지원에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무역금융에 대한 악의적 부실 및 사기가 지속적으로 재발된다는데 있으며, 이는 결국 관련 지원 당사자의 피해는 물론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무역금융제도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국가적으로도 제도적 차원에서 그 개선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 국제무역거래에서 무역금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인 운영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기관과 그 집행기관인 은행 간에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자금 융통 또는 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역금

융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어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로 현장에서 무역금융을 취급 또는 운용되고 있는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하였으며, 또한 그 운용에 대한 시사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I. 무역금융제도의 의의와 그 현황

1. 무역금융제도의 도입과 그 의의

무역금융이란 수출자가 수출이행, 즉 물품 및 용역 등의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을 위해 수출물품의 생산(또는 제조) 또는 원자재 및/또는 완제품 구매(수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선적 전에 지원되는 금융을 의미한다. 수출에 공여되는 생산자금, 원자재 구매(수입) 자금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화로 지원하는 단기 무역금융제도이다. 따라서 무역금융은 물품의 수출에 공여되는 자금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이는 또한 기업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된다(채진익, 2016). 무역금융은 수출계약에서부터 수출대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지원되고 그 수출대금으로 상환된다. 여기서 무역금융이란 협의의 무역금융 특히 일반 수출입금융을 말한다(손성권, 2012).

협의의 의미에서 무역금융이란 무역대금채권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 또는 무역대금채권상환 불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등을 의미한다(Ahn, J., 2011; 홍길중·라공우, 2013). 넓은 의미에서 무역금융은 무역거래에 필요한 자금의 융통 및 조달까지 포괄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수출업체 간의 신용 제공 등을 무역금융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무역결제 방식도 무역금융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Clauffour, J.P. and T. Faroe, 2009; 2011; 홍길중·라공우, 2013).

이러한 의미에서 무역금융이란 외화획득을 위해 물품 수출 및 용역 제공에 공여되는 생산자금, 원자재 구매(수입) 자금, 또한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원화대출 및 관

런 지급보증제도를 의미한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 배정에 반영하는 금융기관의 무역금융은 이 세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취급한 원화대출을 말한다(한국은행, 2014). 또한 무역금융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로 한다(채진익, 2014). 국제무역과 금융관련 관습 및 법률을 발전시켜온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무역금융에 대하여 국제결제(payment)와 융자금융(loan finance), 또는 지급보증(guarantee) 혹은 위험인수(risk undertaking) 기능까지 포함한 넓은 범위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박근서, 2011; 전병영·홍길중, 2015).

그리고 법규적 의미에서 무역금융은 “한국은행 금융기관대출규정” 제11조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척”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의 금융기관별 한도배정을 반영하는 금융기관의 무역관련 원화대출과 그 관련 지급보증제도를 의미한다(홍길중·라공우, 2013).

이와 같은 무역금융은 중소 수출기업에게 비교적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다. 또한 그 절차는 간편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중소 수출기업에게는 유용한 자금조달수단이다. 한편, 정부는 수출기업만을 특정하여 자금을 집중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2. 무역금융제도의 특징

무역금융은 여러 수출지원 수단 중에서 수출 물품의 생산 등에 필요한 수출업체 등의 소요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제도이며 선적 전에 지원되는 금융으로, 수출단계별로 지원, 내국신용장제도의 운용, 사후관리제도, 그리고 융자취급은행(대금의 영수 및 지급 동일 은행) 제한 등의 일반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근서, 2011).

근본적으로 무역금융은 우선, 정책금융이다. 은행이 중소 수출기업에 무역금융을 지원한 후에는 한국은행이 무역금융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은행에 재 지원(재할인)하거나 중앙은행이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금융이다. 일반 대출보다는 저리로 운용되며, 은행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특혜성 자금이다. 즉, 수출증대라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원되는 자금이다.

둘째, 무역금융은 수출증대를 통한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이다. 무역금융은 물품의 수출과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자금 또는 지급보증이다. 따라서 자금용도가 수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 증명방법은 과거 수출실적 또는 신용장, 무역계약서 등의 제시이다.

셋째, 무역금융의 수혜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비계열 대기업이다. 무역금융은 중소기업과 전년도 수출실적이 1억달러 이하인 비계열 대기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자금이다.

넷째, 무역금융은 그 지원절차가 편리·간편하다. 무역금융은 정책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수혜 자격이 발생되며, 그 절차가 간편하다.

다섯째 지원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실적기준 또는 증빙서 기준 중 선택할 수 있다. 과거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된 한도를 산출하여 그 한도 내에서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한도제도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한도 내에서는 큰 불편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사후관리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은 지원된 자금이 수출 물품의 생산 또는 제조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실제로 수출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관리해야 한다.

3. 무역금융제도의 효과와 그 필요성

무역지원제도의 운용이 수출성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Gencturk and Kotabe(2001)는 8,78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성가에 대한 수출지원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수출성가에 대한 수출지원제도의

효과가 간접적인 수출 지원제도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개선을 위한 직접적인 수출지원제도가 더 유용함을 제시하였다(김은영, 2011; 전병영·홍길중, 2015).

정재승(2007)은 국내 중소기업 222개를 대상으로 수출지원제도의 성과를 실증분석 하였으며, 그의 연구에 따르면 수출지원제도의 인지도와 활용도, 수출성과 간에 긍정적인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됨을 보여 주었다. 즉 수출 지원제도의 인지도가 활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활용도가 수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전병영·홍길중, 2015).

정부에서는 한 정책적 수단으로 단기적으로는 무역금융 지원 강화와 수출 마케팅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 주력 산업 중심의 수출을 넘어 수출 포트폴리오(portfolio)를 다각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수출기업이 수출채권을 기반으로 시중은행을 통한 조기 현금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특별 보증을 시행하는 1조원 규모의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

한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은 "기업대출 중 무역금융 대출 비중이 커지면 차 년도 해당 기업 매출에서 수출 비중도 유의미하게 확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 시 한계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등급 중간 수준의 3~6등급 중상위 중소기업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덧붙였다(한국은행).

이는 수출동력으로 무역금융에 대한 중요성이 여전히 크다는 것이며, 다양한 방법의 무역금융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출동력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이는 또한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제무역 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무역금융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무역금융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촉진책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역금융은 우리나라의 수출기반 조성 또는 유망 중소기업의 육성 차원에서 중요한 제도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금융은

그동안 이따금 사기의 표적이 되었으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도 이용되었다. 따라서 무역금융의 지원은 수출증대에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Ⅲ. 무역금융의 제도적 운용과 그 지원

1. 무역금융제도의 운용

국제무역과 금융관련 관습 및 법률을 발전시켜온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무역금융에 대하여 국제결제(payment)와 융자금융(loan finance), 또는 지급보증(payment guarantee) 혹은 위험인수(risk undertaking) 기능까지 포함한 넓은 범위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박근서, 2011; 전병영·홍길중, 2015).

국제무역에서 신용장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다양한 지급결제도 넓은 범위의 무역금융이며, 지속적인 글로벌 무역 성장의 둔화는 무역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글로벌 무역금융의 1/3 정도는 은행 중개의 무역금융으로 지원된다. 결과적으로 무역금융의 부족은 구조적인 무역성과 부진의 원인이 된다. 조사에서 응답은행의 61%는 글로벌 무역금융이 부족하다고 믿는다. 중소기업은 대기업 또는 다국적 기업과 비교하면 무역에 필요한 자금수요에 더 큰 불충분에 직면한다(ADB, 2015). 무역금융의 지원은 국제무역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기여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무역금융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통한 우리나라의 수출증대에 관련되는 자금지원을 의미하는 협의의 무역금융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의 국가 간(기업 간)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대외 실물거래(상품무역과 대형 자본재의 중장기 거래 포함)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은행의 신용공여를 말한다(김창범, 2013). 그러나 일반적인 무역금융이 의미하는 것은 보다 협의의 개념으로서 은행을 통하여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 및 완제품

의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하는 선적전(pre-shipment) 무역금융 또는 단기 무역금융을 의미하며, 낮은 이자율로 제공되어 수출 분야에 한정되는 특징과 함께 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와 대금결제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킴으로써 수출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진우, 2013; 전병영·홍길중, 2015).

무역금융을 취급한 외국환은행은 용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한국은행으로부터 「한국은행 금융증개지원대출 관련 무역금융지원 제도」에 따라 다시 용자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이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취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 산정 시 무역금융 취급실적의 75%를 인정한다(채진익, 2004).

이와 같은 무역금융은 물품의 수출에 공여하는 자금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또한 기업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무역금융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활력을 제고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수출활력의 조기 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대·중소기업 동반수출 지원 및 정부, 지자체, 수출지원기관의 수출총력 지원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출 품목시장기업을 혁신함으로써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수출구조와 그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9).

따라서 무역금융제도는 수출구조와 체질 개선 및 수출증대의 대책으로 채택되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운용에 있어서는 정부 주도가 아닌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무역금융의 대상과 적정 한도

우리나라에서의 무역금융은 정책자금으로 일반 여신보다는 저리로 운용되고 있으며, 또한 그 절차가 간편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엄격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무역금융 및 무역금융관련 지급보증은 각 외국환은행이 취급한

다. 그리고 외국환은행은 무역금융 용자신청업체의 수출실적과 수출능력, 수출 또는 국내 공급에 필요한 실제 소요금액과 기간 및 그 밖의 수출관련 용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정 수준의 무역금융이 용자되도록 하여야 한다(한국은행 운용세칙 제3조, 제4조).

무역금융에 대한 용자대상은 우선, 수출신용장 또는 지급인도(D/P)와 인수인도(D/A) 조건 및 그 밖의 수출 관련 계약서에 따라 물품(대의 무역법에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포함),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자, 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된 내국신용장 또는 「대의무역법」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확인서에 따라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수탁가공 포함)하고자 하는 자,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출 또는 공급실적(수출실적)이 있는 자로서 동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 그 밖에 외화획득, 수출증대 등을 위하여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이 정한 것이며, 중계무역방식에 따른 수출은 용자대상에서 제외한다(한국은행 운용세칙 제5조).

그리고 무역금융은 자금별(포괄금융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해당 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내국신용장 및 구매 확인서 등을 기준으로 취급(신용장기준금융)하거나 또는 당해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적정 금융한도를 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취급(실적기준금융)할 수 있다(한국은행 운용세칙 제7조).

따라서 외국환은행은 실적기준금융을 이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용자한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용자한도는 해당 업체의 과거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용도별 금융은 자금별로 산정하고 포괄금융은 업체별로 산정하여야 한다(한국은행 운용세칙 제8조).

3. 우리나라 무역금융제도의 운영현황

우리나라는 1964년 46억원으로 무역금융 지원을 시작한 이래 수출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무역금융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1984년 2조 7,650억원이었던 무역금융의 규모는 지난 30년간 2013년 13조 1,890억원까지 확대되었다(전병영·홍길중, 2015).

우리나라의 무역금융 규모는 1998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5년 WTO 출범, 1996년 OECD 가입,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개방과, 1998년 세계은행(IBRD) 자금 10억 달러를 비롯해 모두 53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정부가 무역금융의 지원을 위해 투입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전병영·홍길중, 2015).

2008년 이후에는 국제적인 자본시장 규제에 따른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였다(전병영·홍길중, 2015). 특히 모뉴엘 사태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규모가 2014년에 3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9,000억원까지 대폭 축소되었다. 이를 다시 1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hokma@newsis.com). 근래 들어 수출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2019년 무역금융 규모를 전년보다 15조 3천억원 증대시켜 235조원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그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다(연합뉴스, 2019).

정부는 당초 2019년 2년 연속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12조 3천억원을 증대하기로 했다가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가격하락 속에 수출에 적색 신호가 커지자 3조원을 더 증액했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수출단계(계약-제작-선적-결제) 별로 8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35조 7천억원)을 신설하거나 확대했다(연합뉴스, 2019).

산업통상자원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지금은 수출하고 채권을 받아도 제품을 제작하고 그 결제자금을 회수하려면 6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수출기업이 수출채권을 기반으로 시중은행을 통한 조기 현금화가 활성화되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특별보증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거에는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2014년에 3조 5천억원 규모를 지원할 정도였는데 2018년에는 그 지원액은 9천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수출채권 현금화가 위축되었다(연합뉴스, 2019).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기존 수출채권의 직접 매입도 4조 9천억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수출기업에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간접수출 기업들의 매출채권도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3천억원 규모의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새로 고안했다. 수출입은행의 매출채권 기반 대출도 1조 2천억원으로 확대되었다(연합뉴스, 2019).

우리나라는 근래 들어 수출실적이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수출증대를 위해 무역금융의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무역금융제도는 수출증대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계속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무역금융제도로서의 내국신용장 제도

1) 내국신용장의 의의와 개념

국제무역에 따른 무역금융의 지원관리를 위해서 내국신용장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무역금융의 지원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개설되며, 그 개설이 수출거래임을 증명하게 되고 또한 그 수출거래가 이행됨으로써 이를 근거로 일정 기간 동안 무역금융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 사후관리가 이행되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다. 한편 내국신용장은 자금을 일시적으로 유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도 있다. 삭제

내국신용장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수령하였거나 과거 일정한 수출실적이 있는 국내의 수출자가 해외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소요되는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의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수혜자로 개설하는 국내 신용장이다(채진익, 2004).

내국신용장은 과거 일정한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무역금융 한도를 산출하여 그 한도 내에서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수출실적이 없거나, 또는 무역금융 한도가 있더라도 그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용장기준, 즉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근거로 하여 내국신

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때 개설되는 내국신용장은 수출자가 개설의뢰자가 되고 국내의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유통업자)가 수혜자가 된다(채진익, 2004).

이와 같은 내국신용장은 원자재 내국신용장, 입가공 내국신용장, 완제품 내국신용장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개설 단계에 따라 1차, 2차, 3차 내국신용장으로 구분된다. 또 표시통화에 따라 원화표시 내국신용장과 외화표시 내국신용장, 그리고 순수 원화표시 내국신용장으로 구분된다(채진익, 2004).

그러나 내국신용장의 개설 이전에 이미 물품 공급이 완료된 분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대금의 결제를 위해서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다. 내국신용장은 원수출신용장과 마찬가지로 UCP 600이 적용된다.

그리고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대상은 해외로부터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제조)된 수출용 원자재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입가공 위탁 포함)하고자 하는 업체이다.

2) 내국신용장의 운용

내국신용장은 수출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물품 제조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를 구매하여 제조·가공한 후 직접 수출 또는 국내 다른 수출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체의 의뢰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국내의 완제품 또는 원자재 공급업자를 수혜자로 하여 개설하는 지급보증 즉, 신용장이다. 내국신용장은 개설은행이 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무역금융 융자대상 증빙으로 인정하여 제조 및 가공에 소요되는 생산자금과 수출용 원자재 구입자금을 무역금융으로 융자하며,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공급 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국산 원자재의 사용 촉진을 통한 외화 가득률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주간무역, 2018).

예컨대, 수출용 원자재를 내국신용장으로 구매 시 개설은행으로부터 원자재 금융을 융자받을 수 있다. 물품 구매 시 내국신용장을 이용하

는 경우에 물품을 수령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므로 자금 부담이 경감된다. 개설의뢰자는 내국신용장에 정해진 기일 내에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물품 확보에 원활화를 기할 수 있다(주간무역, 2018).

내국신용장은 수출을 위한 용도로 국내에서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조달하기 위해 이용되는 신용장으로 무역금융과 연계되어 개설되는 은행의 지급보증이기 때문에 그 운용에 있어서 화환신용장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우선 개설의뢰자는 과거 수출실적을 근거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또는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근거로 하여 복수의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또한 물품의 제조 공정(단계)에 따라 수직으로 차수에 제한 없이 내국신용장의 개설이 가능하다. 둘째, 수출신용장과 마찬가지로 내국신용장도 물품대금의 회수를 위해 발행된 일람출급 환어음의 매입 또는 추심을 통하여 그 대금이 결제되고 있다.

그리고 내국신용장은 국내 업자 간의 신용장 거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결제되어야 하지만, 내국신용장의 표시통화는 순수 원화, 외화 표시 또는 외화부기 원화 표시로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외화부기 원화표시 내국신용장의 환어음 매입 시에는 부기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매입 당시의 매매기율을 적용하여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실무적으로 외환시장 상황 및 기업의 상황을 검토하여 자사에 유리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 될 것이다.

Ⅶ. 무역금융제도의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내국신용장의 제도적 운용과 개선

1) 내국신용장거래 프로세스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후에 그 절차적으로 개설의뢰자는 물품을 인수하고 그 인수증을 발급하여 수혜업자 앞으로 전송하며, 그 수혜업자

는 물품 인수증과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내국 신용장에 명시한 서류에 환어음을 첨부하여 매입신청서와 함께 자신의 거래은행(매입은행) 앞으로 매입을 의뢰한다. 당해 매입은행은 접수된 서류를 확인·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수혜자의 계좌에 입금한 후에 내국신용장어음매입용 계산서를 수혜업자 앞으로 전송한다.

이와 같은 절차에 있어서 개설의뢰자의 입장에서는 원자재 자금의 지원으로 내국신용장어음을 결제할 수 있고,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원자재의 확실한 조달수단으로 이용된다.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무역금융의 수혜를 위한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은행의 지급보증으로 물품대금의 회수가 보장된다.

그런데 문제는 내국신용장은 수출용 물품을 제조가공을 위한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또는 수출용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개설되는 유용한 제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 유용 수단 또는 자금세탁 방법으로도 이용될 수도 있다. 즉 내국신용장 상의 수혜자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을 경우, 그 상대 거래처로 하여금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부탁함으로써 당해 세금계산서와 물품수령증을 위조·발급받아¹⁾ 이에 환어음을 첨부하여 당해 서류를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매입을 통하여 자금을 확보하여 유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

되면 그 이후 당해 기업의 부실을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원기관의 자금 손실로 이어진다.

즉 실제로는 수출용 원자재 또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물품공급자와 구매자와 공모하여 서류를 위조(절차 간편성으로 공모 용이함)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내국신용장 서류(물품수령증, 세금계산서 등)를 매입은행에 제시·매입하여 자금을 수취·유용하고, 그 서류가 내국신용장의 개설은행 앞으로 제시되면 당해 구매자의 자금으로 상환하지 않고, 당해 건의 결제를 위해 물품 공급업자가 위조·발행한 서류로 매입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실제로 수출거래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금결제를 위한 무역금융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자기자금으로 결제해야 되는데 이 또한 결제자금이 부족하면 또 다른 위조서류의 매입자금으로 상환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내국신용장의 수혜자는 통상 3-4일 간의 자금을 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그 상환자금이 없어 그 유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또 다른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다시 위조서류를 매입은행에 제시하여 매입한 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소위 연속적인 카드깡과 같은 수법으로 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우선 내국신용장 거래는 신용장거래로서 개설은행의 대금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그 공급업자는 안심하고 제조 또는 생산하여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유용한 제도적 기능보다는 주로 무역금융을 지원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적 기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시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그 위조된 서류로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그 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파산상태에 이르러서야 그 부실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더욱이 아직도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자금을 유용하거나 또는 자금세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

1) 실제로 현장에서는 일시적 자금유통 또는 사기를 위해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국내 한 관례에서 “피고인 1은 일명공소의 10과 함께 일정한 수출실적이 있으면 담보가 없어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행하는 수출신용보증서만으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저리의 무역금융을 대출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무역금융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물색하던 중 2007년 10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의 4를 통하여 친구 류제조업을 운영하던 공소의 6으로부터 대출 부락을 받고, 법인을 인수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방법으로 수출실적을 만들고 인수한 법인을 수출업체로 조작한 다음 이를 통해 무역금융을 받았다. 외국에 수출을 하거나 국내에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으로 외국환을 거래하는 방법 등으로 무역협회로부터 2008년 1월 270,000달러 상당의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2. 11. 선고 2009고합32 판결).

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이는 당해 기업의 부실 징후 및 그 확대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파산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원 은행의 부실을 극대화하고 또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실무적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부실을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수시로 지원 기업의 부실 징후 및 불법적 행위 등을 인지할 수 있는 담당자의 역량이 중요하며, 또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예방해야 할 것이다.

2) 거래절차의 디지털화와 그 투명성

국내 전자무역에 관련된 모든 은행 거래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내국신용장의 거래도 전자화되었다. 국내 무역거래의 디지털화로 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나 반제품 등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해 개설하는 '내국신용장(Local L/C)' 업무가 간편해졌다. 내국신용장의 개설과 매입·추심 관련 서류의 제시까지 전자화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은행에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던 내국신용장 관련 서류의 제시 업무까지 기업의 사무실에서 전자무역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수행·확인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내국신용장거래를 포함한 모든 무역금융거래를 디지털화함으로써 그 절차적 투명성 향상과 시간과 비용 절감을 통하여 관련 무역업계의 부담이 큰 폭으로 감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절차적 전자화를 통하여 시간과 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의 거래절차에서 내국신용장의 개설의뢰자와 그 수혜자 간의 중요한 거래절차인 세금계산서 및 물품수령증 등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서류위조 가능성에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며, 또한 독자적인 예방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역금융(내국신용장)거래에서 주로 발생될 수 있는 물품수령증과 세금계산서의 불법적 발급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역금융거래에서는 확실한 사후관리를 위해 거래증빙, 수출명장 및 결산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양 거래당사자의 재무제표 및 그 거래에 관련된 증빙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사후관리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은행거래에서부터 세관업무에 이르기까지 사후관리와 연계한 완벽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의 불법적 관행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은행은 디지털화된 선진 시스템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거래기업의 재무 및 영업 동태를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일부 거래에서 이와 같은 기업의 시스템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기업의 이상 징후가 조기에 발견되면 즉시 무역금융의 지원을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 징후 기업의 서류 위조를 발견하지 못하고 기업의 파산상태에 이르기까지 자금을 융통하고, 또 돌려막기 식 대응을 통하여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부실이 커지면서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이를 악용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였다.

따라서 은행, 세관 및 기업의 거래의 연관성을 시스템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서류 위조 및 부실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지원 공공기관 간에 업무 공유 및 사후관리 시스템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 수준에서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과 같은 이행 서류의 확인은 물론 이와 연계하여 재무제표, 기업의 동태 등과도 연계한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업무적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무역금융지원의 제도적 개편

1) 절차적 관점에서 사후관리시스템의 개선

무역금융은 국가적으로 수출장려를 위해서 정책금융으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그 절차적 복잡성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신청에

관련된 제출 서류의 간소화, 그리고 지원 여부의 적격성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영업 현황 및 재무상태 분석 등의 각종 심사·평가 절차를 완화·생략하는 등 업무적으로 많은 편의를 제공했으나,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그 절차적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무역금융의 지원과 그 사후관리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획일적 제도적 관리에서 벗어나 은행권의 전문 인력이 독립적·창의적으로 판단하여 무역금융을 지원·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즉 당해 지원은행의 책임 하에 지원기업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그 지원 근거와 그 이후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상황을 유지·보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또 무역금융에 대한 담보(부동산 등)를 확보함으로써 부실관리를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절차에 있어서는 기존의 서류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판단하기 보다는 취급점의 기준 및 담당자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 등을 기초로 무역금융을 취급하고 사후 관리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을 통하여 무역금융을 취급하고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그 수혜 기업의 재무적 및 영업적 동향이나 상태 파악 등을 시스템과 담당자의 업무적 전문성으로 관리·수행해야 할 것이다.

사실 과거에는 기업이 무역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인수증 및 계약서 등의 서류 조작, 그리고 이를 통한 매매거래 및 수출실적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무역금융 한도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지원되고 또한 서류가 간편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금융권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금융업무 행태가 개선되어야 하며, 형식적 서류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지원 절차에 있어서는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기반으로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비즈니스 동향(상태) 등을 파악하여 문제 여부를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통한 실질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업무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또한 이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

후관리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담당자의 자체 판단만으로도 사후관리가 이행되고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한, 그 이후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담당자에 대한 면책되는 제도적 차원의 개선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업무적 역량을 기반으로 은행과 세관의 통관시스템을 비롯한 지원기관의 업무시스템을 연결함으로써 수출입 신고내용을 비롯한 금융지원 상황 등을 공유하고, 또한 그 무역금융 수혜기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각종 실적 등의 논리적인 확인을 통하여 그 사후관리를 시스템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금융부실 및 불법적 거래를 효과적으로 예방 또는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2) 무역금융지원의 제도적 개선

무역금융제도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대·환경적 변화에 대한 제도적 개선·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과거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은행의 금융부실과 무역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원은행은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은행의 국제 경쟁력을 추락시키며, 결국에는 금융 산업의 선진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제도적으로 은행이 무역금융을 실행한 후에는 수혜 기업이 반드시 관련 수출신고필증 또는 계약서 등과 같은 확인 가능한 증빙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모뉴엘이 수출 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 지원을 받아 금융기관에 수출채권의 매각을 통하여 사기대출을 지원받음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손실 또는 부실을 확대시켰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시스템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역금융이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하도록 수출용 물품(제품)의 생산(제조)에 투입되었다는 근거를 제출받도록 해야 한다. 그

러나 모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판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무역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만 규정하고, 그 실행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은 은행권의 자율에 맡기도록 함으로써 업무적 경험을 축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무역금융지원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 및 시스템적 운용이 필요하다.

3) 무역금융 전문인력 육성

은행이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서 반복적인 구습관행에서 벗어나 체질개선과 자체 역량강화를 통하여 선진화된 금융기법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무역금융의 실효성 향상과 그 효과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정책지원과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그리고 효과적인 시스템적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형식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실행·관리하는 창의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예컨대 무역금융 지원기업의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 성장 잠재력, 경영자의 역량과 자질, 경영시스템의 선진화 또는 정보화 역량,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 등을 기반으로 무역금융의 지원규모와 그 지원 여부를 판단·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원은행의 자체 판단으로 기업의 지원규모를 조사·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황변화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 상황을 효과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무역금융의 한도를 축소하거나 또는 즉시 중단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장래의 부실을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을 위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역금융의 사후관리는 그 관리자의 판단력과 관리 역량이 중요한 분야이다. 즉, 무역금융의 운용을 위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및 업무적 감각과 더불어 지적 관리 능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금융권의 무역금융 담당인력은

일반적인 사무관리 능력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금융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단순한 수치 관리 및 관련 자료의 관리보다는 담당자의 창의적인 판단·관리를 바탕으로 한 금융수혜자의 동태파악과 재무제표 분석 등의 역량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문 인력의 인증제도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K-SURE 폐지 및 무역금융의 정책지원기관 일원화

모뉴엘 사건에서 보듯이 무역금융의 부실 또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그 보상 문제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권과 이를 보증한 K-SURE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예방하는 정책은 없이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여 무원칙하게 금융지원을 의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직도 관치금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이며 또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지속적으로 유사 금융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수출성장의 동력으로 무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추가적인 출자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금융기관과 정부 주도의 정책 또는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무역금융의 지원 효과를 누릴 수 없다. 그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비효율적인 자금공급으로 그 자금이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역금융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관리는 은행이 전적으로 맡고 있으며, 자금 또한 은행의 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K-SURE의 무역보험 또는 수출보증 등을 통하여 무역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용도 또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유용한 제도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은행권의 정책자금의 지원에 필요한 무역보험의 지원 또는 수출보증의 형식적인 지원 이상의 역할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즉 은행이 무역금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증서 또는 보험가입 사실만

을 제공할 뿐 그 지원 후의 무역금융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부실해 보이며, 그 무역금융제도에 관해서도 이해력이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무역금융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역보험공사의 관련 업무를 은행과 민간 보험사에 이관하고 현재 무역보험공사는 폐지되는 것이 무역금융의 지원효과 및 사후관리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은행을 상대로 보증업무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국가적 낭비로 보인다.

정책금융으로 지원되는 무역금융에 대해 모든 책임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한다면 K-SURE의 수출신용보증은 그 역할이 무의미해진다. 무역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특히 매출채권(수출채권)의 운용상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로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과 운용상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채진익, 2016). 이미 언급했듯이 K-SURE는 폐지하고, 그래도 필요하다면 K-SURE는 수출기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마케팅 활동지원 정도로 단순화 및 축소하고, 수출보험 및 보증업무는 모두 은행권과 보험사로 이관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은행권은 K-SURE로부터 이관된 수출입 보험 및 보증 업무에 대한 금융상품을 설계하여 독자적으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무역금융을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는 은행의 금융 선진화에도 기여될 것이다.

따라서 무역금융지원시스템 전반적인 관점에서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을 통하여 정비·보완을 통하여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적 지원기관은 은행과 통합하거나 또는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등을 포함한 관련 지원기관의 역할 조정과 재편이 필요하며, 이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경우 은행은 해당 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여부, 한도산정 등을 자신의 실정과 기업의 상태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그 역량

이 강화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은행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 및 지원 방향을 강구하면 될 것이다(채진익, 2016).

3. 무역금융사기 유형과 개선방안

1) 수출물품의 가격 조작과 대응

무역금융은 수출지원 정책자금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의 형식을 통해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을 선지급 후, 해외 수입자의 결제대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제도로, 무역금융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무역금융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허위로 가공·반복적으로 수출입 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관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6.9.20.).

모뉴엘의 경우 3조 2천억 원대 대규모 무역금융 편취 사건에서는 저가의 '안방극장 컴퓨터(홈시어터 PC)'를 고가로 조작, 허위 수출입을 반복하여 조작된 수출 서류를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약 3.2조 원대 무역금융을 편취하였다(관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6.9.20). 그러나 이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심을 가졌다면 조기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즈니스 감각과 경험도 전혀 없고 또 책임의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무역보험공사의 전문성 향상이 시급하나, 이미 언급했듯이 본 제도를 폐지하고 은행에 통합함으로써 이와 같은 고질적 문제 또는 사기를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에 따라 관세청과 금융권은 각각 보유한 수출입 통관정보와 무역금융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무역금융 사기를 예방하고 그 사기가 발생하기 전에 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종전까지 관세청은 통관절차의 간소화(수출신고 자동 수리)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모든 수출품에 대한 검사

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물의 확인 없이 수출자의 수출신고 정보만으로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금융기관 역시 대출심사 단계에서 수출자가 제출한 무역금융 서류만으로는 실제 수출 여부 및 가격 적정성까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적발하기에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것이다(관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6.9.20.). 그러나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담당자의 무관심과 무능이 문제이지 전문성과 경험에 기반하여 직무에 충실했다면 충분히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18년부터 관세청은 수출입은행(15.6월), 한국무역보험공사(15.7월), 은행연합회(16.3월)와의 무역회환거래 질서 유지 및 무역금융 사기대출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로 효과적인 무역금융 편취 단속과 대출 심사단계에서의 무역금융의 사기 예방에 전력하고 있다.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 시행에 따라 관세청은 금융권이 제공하는 대출심사 정보와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수출통관 자료와 외환거래 자료를 연계·분석함으로써 허위 수출 및 사기대출 업자를 판별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관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6.9.20.).

특히, 금융권은 관세청의 수출이행 정보 확인으로 가공수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대출신청 건과 관련한 특정 수출품목의 수출가격 범위 정보를 활용하여 수출가격의 고가 조작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역금융 편취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고 한다(관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6.9.20.).

그동안 지속적인 무역금융에 대한 사기성 거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 즉 관세청, 은행권,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리고 은행연합회 등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협력적 공동 대응책을 시행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근본적으로는 각 지원기관의 담당자의 전문성 및 경험이 중요하며, 또한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화를 통하여 시스템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현 기능

을 한국수출입은행이나 그 이외의 은행이 담당하는 것이 그 제도적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은행이 기업과 직접 거래하면서 그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을 비롯하여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 은행의 적정 수준의 용자와 그 근거 확인

무역금융 취급세칙 제4조는 “외국환은행은 무역금융 용자신청업체의 수출실적과 수출능력, 수출 또는 국내 공급에 필요한 실제 소요금액과 기간 및 기타 수출관련 용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정 수준의 무역금융이 용자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 제2조 제1항에서 “외국환은행은 무역금융 용자신청 업체가 무역금융을 할인받거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대출(인도전 금융) 등을 용자받는 경우에는 적정 수준의 무역금융을 용자함으로써 중복 금융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 규정에서 그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며, 또한 그 수준의 결정기준과 확인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무역금융의 지원한도에 대해 규정하고는 있으며, 은행은 이에 맞추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적정 한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한도 범위 모두 지원받는 것으로 이해되고 실정이다. 따라서 제도상의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기업의 재정상태 및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정 규모로 지원해야 할 것이며, 그 지원을 위한 판단 기준으로 단순한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기업의 능력(수출규모), 향후 비즈니스 전망 및 상환능력(재무제표 분석) 등을 근거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역금융을 용자할 시 그 근거에 대한 확인 방법으로는 단순한 과거 수출실적 또는 매매계약서만을 근거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잠재력 및 향후 예상실적 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거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로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본 계약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받아 오도록 한다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은행 간의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것이다. 물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보험) 지원이 아닌 경우에는 은행 자신의 책임 하에 단독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모두 은행 측의 책임이다.

한편 무역금융을 용자받은 수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출신고필증 및/또는 관련 증빙 등을 첨부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기 대출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은행은 관련 증빙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빙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증빙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

3) 은행권의 선진화된 여신심사·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은행에서는 금융지원을 위한 여신심사의 시스템화와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 여신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들, 즉 기업의 수익성, 매출액 증가율, 기업의 동향 파악 등을 위한 재무제표 분석의 시스템화와 금융기관 담당자의 업무 역량 또는 전문성 향상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정확한 실사와 동향파악이며, 종합적으로 연계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직접적으로는 무역금융을 지원받는 기업의 실적 조작과 경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무역금융 관련 은행의 여신심사와 사후관리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감독기관은 이를 위한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검사 등을 통해 점검해야 할 것이다.

근래에는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은행의 수출채권 매입 시 거래계약서, 운송증, 수출물품 인수증빙 서류, 선하증권 등 관련 기본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고, 또한 선사화물 추적시스템 등을 통한 실제 선적 및 운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무역금융을 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를 강화하고 있다(MOTIE·MOSF

·FSC·KCS·FSS, PR, 2015).

따라서 그동안 간편했던 무역금융절차에 있어서 지원심사 시 일반 여신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투명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모든 절차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신심사 및 그 사후관리의 전문성 향상과 선진화이다.

V. 결론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수출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무역금융은 수출증대를 위해 지원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출동력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 이는 또한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무역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효과적인 무역금융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와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대·환경적 변화에 따른 제도적 개선·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다. 즉 은행의 금융부실 및 무역금융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관련 당사자는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그 취급기관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 취급에 허술하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은행의 국제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원인일 것이다.

모뉴엘 사건에서 보듯이 무역금융의 부실 또는 사기사건이 발생하면 그 보상 문제로 대출을 실행한 은행권과 이를 보증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분쟁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금융 산업을 퇴보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지속적으로 유사 금융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역금융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무역금융의 지원도 정책금융에서 주어지는 그 절차상의 혜택은 없애고 엄격한 절차를 통한 지원·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그 취급 이후 수혜 기업의 동향이나 기업 재무상황 등

의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시스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무역금융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획일적 관리에서 벗어나 무역금융의 지원에 대한 전반적 사항은 은행의 책임 하에 독자·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무역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만 정하고, 그 한도를 포함한 실행에 대한 모든 사항은 은행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넷째,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서류를 기반으로 하기 보다는 담당자의 전문성 및 경험을 통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물론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서류 보장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무역보험공사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무역보험공사의 모든 업무를 은행권으로 이관해야 한다. 은행이 통합·관리한다면 금융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금융지원시스템 전반적 관점에서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을 통하여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 지원기관은 무역금융에 관련된 선진 금융기법과 금융상품의 개발과 함께 취급 담당자의 전문적 역량이 향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등을 포함한 관련 지원기관의 역할 조정과 재편이 필요하며, 이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References

- Ahn, J. (2011), "A Theor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Finance", *IMF Working Paper*, WP/11/262.
- ADB (2015), "Analysis of Global Trade Finance Gaps", 310.
- Clauffour, J.P., T. Farole (2009), "Trade Finance in Crisis Market Adjustment or Market Failur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5003.1-36.
- Kim, Chang-Beom (2013), "Trade Finance and Export: Dynamic Causal Linkages and Policy Priority",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 and Business*, 26(2), 773-787.
- Park, Keun-Seo (2011), "Trade Finance and Principle of Optimal Loan : BOK Trade Finance Rules and K-sure Pre-Shipment Export Credit Guarante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12(4), 63-81,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65.
- Son, Seong-Kweon (2012), "A Study on the Use of Trade Finance System", a Master's Dissertation, Gwangju University Graduate School, 19.
- Lee, Jin-Woo (2013),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Electronic Trade Finance in Korea", a Master's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7.
- Jeon, Byung-Young (2015), "A study on Effects of International Trade Finance on Exporting corporations",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15(3), Korea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229-249.
- La, Kong-Woo (2013), "A study on improvement of Trade Finance under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regulations",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15(3), Korea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289-310.
- Chae, Jin-Ik (2016), "A Study on the Major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under Korean Trade Finance System based on Case Analysis",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17(1)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175-196.

- Chae, Jin-Ik (2016), *International Trade Payments*, Dunam Publishing Co.
- Korea Customs Service/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2016), Press Release. 2016. 9. 20.
- Maeil Business Newspaper, Aug. 3, 1998.
- MOTIE (2019), Press Release, Available from <http://www.motie.go.kr>(accessed March 4, 2019).
- MOTIE, MOSF, FSC, KCS, FSS (2015, 4. 17), Press Release.
- MOTIE (2019), “Marketing support to on the other half of Small and medium-sized export enterprise”, available from NEWSIS; <https://news.v.daum.net/v/20190304112313620><https://news.v.daum.net/v/20190304112313620>URL(accessed March 4, 2019).
- Yonhap News (2018, March 04), ‘There’s a crisis in the export market’, Increase Trade Finance by 15.3 trillion won”(accessed March 6, 2019).
- Weekly Trade (2018, November 15), “What should we do to procure export goods” available from <http://weeklytrade.co.kr/news>(accessed November 21, 2018).
- Korea JoongAng Daily (2019, March 4), “Trade finance of 235 trillion won, Special warranty by export contracts”, available from <https://news.joins.com/article/23400775>(accessed March 6, 2019).
- Digital Times (2018, March 04), “Surprise Prescription with Trade Finance of 235 trillion won, It was not strong enough to prevent export shock”, available from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accessed March 6, 2019).
- The Bank of Korea (2014), Operating Detailed Regulations for Trade Finance Program Related to the Bank of Korea Financial Intermediary Support Loan, Article 2. 3, 4.